제796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1.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항목 추가(신설)ㅇ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계열사 간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매입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인 경우 그 거래현황을 연 1회 공시	1.비중요
2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1.서면실태조사 근거조항 신설(신설) 공정위의 실태조사 근거 및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	1.비중요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 요건(신설) 협회 설립 시,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1.비중요
4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환경부)	1.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고시(신설) 가.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은하지 않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한정 함(안 제3조) 나.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조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차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로 하고, 상부 공간은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최소 20%를 비워두어야 함(안 제6조) 마. 용기의 외부에 표시사항(제7조) 바. 장기보과 또는 영구보관 시에 용기 내 수은 순도는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함(안 제8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여성가족부)	1.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신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중요 사항 변경등록 사항을 추가함.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의 증감 3. 정원의 변경 4. 법 제1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면적의 변경 5.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1.비중요
6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요건 및 절차 등(신설) o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o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됨	1.비중요
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사업시행자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신설) ▪ 국가(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처분기준(허가취소 등)을 현행 공항시설법에 준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 신공항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 상 공항개발사업에 해당되므로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항시설법 등 개발사업 관계법 상 처벌기준 등의 반영 필요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특수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및 차령 제한(신설) 캠핑용특수자동차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정함	1.비중요
9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1.기상특보 시 안전 조치 강화(강화) ○ 現 기상특보 시 출항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업을 금지하고, 어선소유자 또는 선장은 출항 전에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도록 책임의무 부여 * 제10조(출항 및 조업 등의 제한) ②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출항 전 기상을 확인하여 기상예비특보 및 기상특보가 발표·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2.어선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 확대(강화) 일정규모(2인) 이하 조업어선에 승선한 자는 조업 또는 항행 중 갑판에 있는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개정* * (현행) 기상특보 발효시 갑판에 있는 경우 → (개정) 현행+2인 이하 조업어선 추가	1.비중요 2.비중요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운용규제 강화(강화) ①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1.비중요 2.비중요 3.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영업행위로 규정 ② 펀드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자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등도 제한 ③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로서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만 설정·설립 ④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금액 계산시 포함하고,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기준도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규정 ⑤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대상을 전문투자자 등으로 한정하고, 금전대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재간접펀드는 조건부 허용 ⑥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분기별 보고사항을 영에서 정하도록 규정 ⑦ 업무집행사원 운용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및 자산 취득·매각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미자격자의 운용행위 금지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신설) ①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으로 펀드의 유동성 위험 등 추가 ② 기준가격 산정시 기준가격 계산일의 순자산총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③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를 사전 검증 후 투자자에게 교부 및 설명하여야 하며, 판매 후 펀드의 운용이 투자설명자료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 3.사모펀드 등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강화) ① 금융투자업 등록 직권말소 당시 임원, 대주주에 대해서는 말소일로부터 5년간 같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재등록 신청시 본인, 대주주 결격 적용 ② 수탁사에 대해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수탁사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종목·수량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③ 일반 사모펀드의 설정·설립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목적의 투자 중 5가지 경우에 대해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 ④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시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정함 ⑤ 펀드간 복층·순환출자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고 투자자 범위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 한정 ⑥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사항 등 사모펀드의 리스크 관리 및 펀드 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보고사항을 구체화 ⑦ 상근임직원인 업무집행사원 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업무집행사원의 재무제표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⑧ 적기시정조치 미이행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등록취소 근거 신설 및 유사사유 발생시 다른 영위업무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⑨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신설 영업행위 위반을 금융당국의 처분 사유에 포함 ⑩ 판매사의 운용사 점검보고 관련 사항,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재무제표 제출 접수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절차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 범위 규정 ⑪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집행사원이 변경보고 또는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1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추적조사 및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신설) ㅇ 위기대응 의료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제품 중 사용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법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추적조사 보고방법 및 이상사례 보고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2.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 내역 등록(신설) ㅇ 위기대응 의료제품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제품 중 사용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법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에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따라 투여·사용 등록 및 판매·공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3.긴급 생산·수입 명령 절차(신설)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제품의 물량 확보를 위한 긴급 생산·수입명령의 내용을 규정하는 행위 ○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통지 받은 자로 하여금 생산·수입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행위 4.유통개선조치 절차(신설)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개선조치 대상이 결정되는 경우 대상자별 필요한 조치를 규정 - 판매처로의 출고 및 출고량 지시, 판매절차 및 판매수량, 개인별 판매 할당량, 판매가격 등 ○ 유통개선조치 대상은 통지 받은 후 그 조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행위	